



2016년도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GUIDE BOOK

◇ 목 차 ◇

※ 2016년 하반기 변경사항	-----	1
1 자금신청 및 지원 절차	-----	2
2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개요	-----	3
3 경영안정자금	-----	4
1) 지원대상	-----	4
2) 이자지원율	-----	4
3) 지원한도 및 내역	-----	5
4) 구비서류	-----	7
1) 일반기업자금	-----	7
2) 목적자금	-----	9
4 구조고도화자금	-----	12
1) 지원대상	-----	12
2) 지원내용	-----	14
3) 구비서류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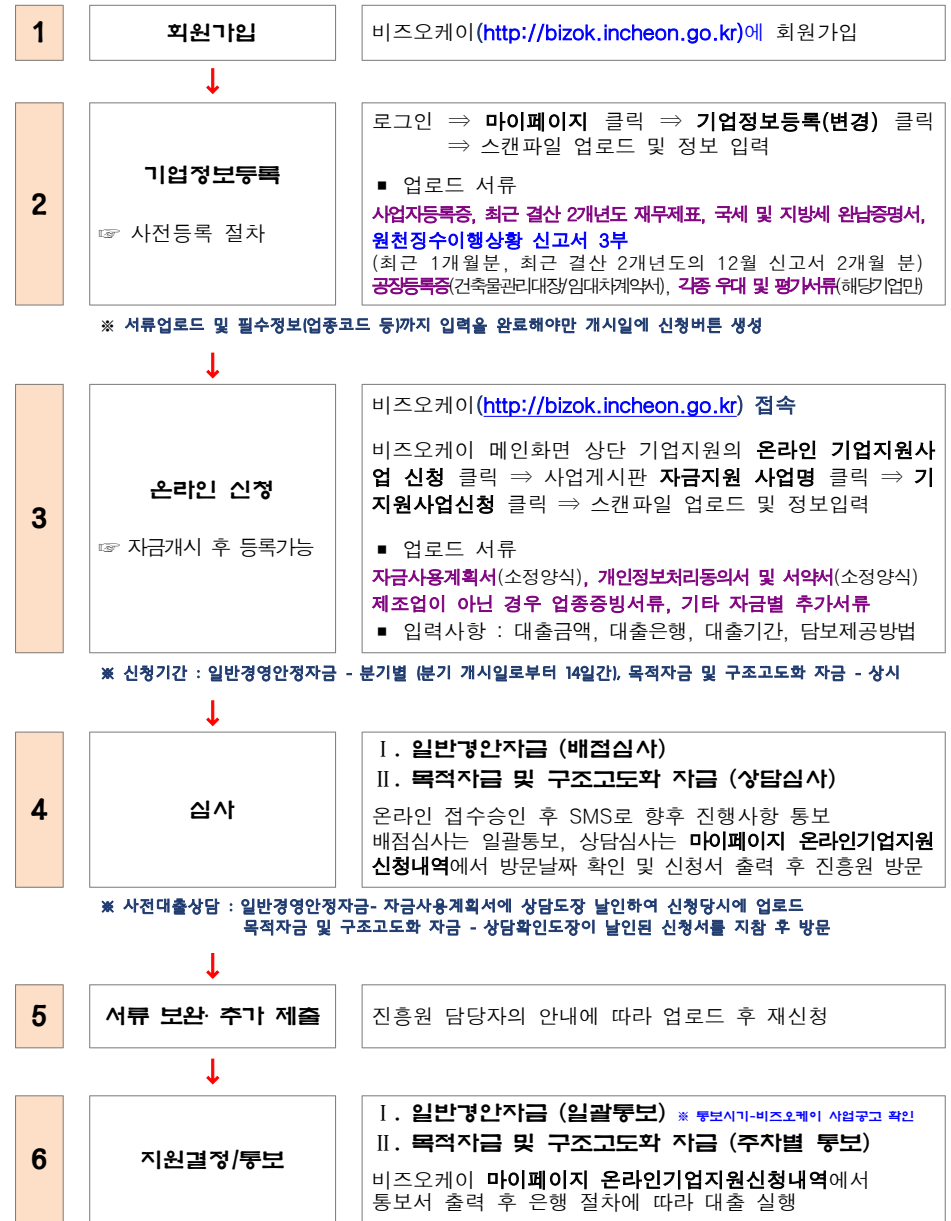
※ 2016년 하반기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지원횟수	3회차로 제한 (만기일로부터 5년 이후 신청 가능)	횟수제한 폐지
고성장 자금	매출액 또는 종업원수가 증가한 기업자금 신설(2016년)	고성장기업자금 II 추가확대
수출기업 자금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수출실적 500만불 이하 업체로 제한	제한기준 폐지
기술기업 자금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의 기술기업으로 제한	제한기준 폐지
우대 추가	-	가족친화기업
용자기간	용자기간 2,3년 지정	통보서 지정 폐지 (대출 취급시 2,3년 선택)
자금 용자금리 인하	기계공장 : 3.0% ⇒ 2.8% , 벤처창업 : 2.5% ⇒ 2.3% , 지식산업센터 : 3.0 ⇒ 2.8%	

[유의사항]

- 횟수제한은 폐지되었으나 자금 수요가 많은 경우 평가표를 통해 심사함 (심사항목-횟수반영)
- 기존 고성장자금은 3개년도 매출액(또는 종업원수)증가를 평균이 20% 이상 충족되어야 하나 최근 결산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에 한해 3개년도 증가율 평균이 5% 이상일 경우 확대 지원하며 수요가 없을시 한시적으로만 지원될 수 있음
- 용자기간은 통보서에 지정되어 표기되는 것만 폐지될 뿐 대출 취급은 2년, 3년 상환스케줄에서만 선택 가능

1 자금신청 및 지원 절차



2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개요

구분	경영안정자금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내용	은행자금 협조용자	인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	
	운전자금의 이차차액보전 (보전금리 0.3% ~ 2.0%)	시설자금의 저리용자 지원 (대출금리 0~2.8%, 재해자금(무이자))	
지원자금	운영자금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자금 벤처창업자금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재해자금
연간규모	7,500억원	270억원	230억원
지원대상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등	제조업, 벤처기업 등	지식산업센터설립사업자 재해기업
용자한도	3억원 ~ 30억원 이내	3억원 ~ 10억원 이내	2억원 ~ 200억원 이내
용자기간	2년, 3년 ※단, 수출자금은 6개월, 1년	5년, 8년	5년, 8년
신청기간	분기별 및 상시접수	개시일 ~ 소진시	
대출은행	기업, 신한, 국민, 우리, 농협, 하나, KEB, 씨티, SC, 산업, 전북, 부산, 수출입은행(수출자금) 등 12개 은행		

※ 경영안정자금 분기별 지원한도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7,500	1,700	1,500	1,000	500
일반기업자금	4,700	1,700	1,500	1,000	500
목적자금	2,800	2,800			

- **일반기업자금** : 목적자금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기업, 분기별 14일간 접수 후 심사평가하여 지원결정
- **목적자금** : 상시 접수 및 지원결정
- 산업확충기업 - 우리사전입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산업단지입주기업, 산단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
- 창조경제혁신기업 -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하는 기업
- 수출기업 - 수출계약(또는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자금이 필요한 기업
- 고성장기업 I - 최근 3개년도 매출액 또는 상시 종업원 수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
- 고성장기업 II -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며, 최근 3개년도 매출액 또는 상시 종업원 수가 **연평균 5%** 이상 증가한 기업
- 기술창업기업 - 창업 7년 이내의 창업기업 및 기술기업으로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지원(신규보증)이 가능한 기업 중 보증료 1% 초과기업

3 경영안정자금

1) 일반기업 지원대상

■ **제조업** : 제조업 요건 2가지를 충족해야 지원 가능

- ①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 최근 결산년도 손익계산서에서 【제품매출】 / 【전체매출】 비율이 30% 이상
- ② 공장등록 (또는 건물용도 확인)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공장/제조소 용도)

■ **비제조업** : 업종증빙 서류 별도 확인 필요

- ※ 사업자등록증 표기사항만으로는 증빙되지 않으며, 반드시 관련된 등록증 또는 허가증이 있어야 지원가능
- ※ 지원업종 및 증빙서류는 뒷장의 【경영안정자금 구비서류】에서 확인

2) 목적자금 지원대상

산업확충기업	- 우리사 전입기업 :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인천시 선정 중견사다리기업 (지정받은 후 3년 이내) - 신규산업단지기업 : 강화 및 서운산단 입주(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및 입주예정기업 - 산단 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창조경제혁신기업	-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하는 기업
수출기업	- 수출계약(또는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자금이 필요한 기업 ※ 수출계약의 90%이내 또는 수출실적의 1/2이내 지원
고성장기업 I	- 최근 3개년도 매출액 또는 상시 종업원 수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 ※ 매출액 : 최근 결산 3개년도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 종업원수 : 최근 3개년 마지막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개월분 (마지막월 신고서 간이세액 인원추출)
고성장기업 II	-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고, 최근 3개년도 매출액 또는 상시 종업원 수가 연평균 5% 이상 증가한 기업 (증빙서류는 고성장기업 I과 동일)
기술·창업기업	- 창업 7년 이내의 창업 및 기술기업으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지원(신규보증)이 가능한 기업 중 보증료 1% 초과기업

▶ 목적자금은 일반기업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추가 제출서류 필요

3) 이차지원율

항목	이차보전금 지원 내용			
기본지원율	● 기업 대출금리별 기본 지원율(차등지원)			
	지원 업체 용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 업체 용자금리	이자지원율
	1.01% ~ 1.50%	0.3%	5.01% ~ 5.25%	1.2%
	1.51% ~ 2.00%	0.4%	5.26% ~ 5.50%	1.3%
	2.01% ~ 2.50%	0.5%	5.51% ~ 5.75%	1.4%
	2.51% ~ 3.00%	0.6%	5.76% ~ 6.00%	1.5%
	3.01% ~ 3.50%	0.7%	6.01% ~ 6.25%	1.6%
	3.51% ~ 4.00%	0.8%	6.26% ~ 6.50%	1.7%
	4.01% ~ 4.33%	0.9%	6.51% ~ 6.75%	1.8%
	4.34% ~ 4.66%	1.0%	6.76% ~ 7.00%	1.9%
	4.67% ~ 5.00%	1.1%	7.01% ~	2.0%
	※ 대출금리는 변동 및 고정으로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금리는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은행과 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			
상한율	● 기업의 대출금액에 따른 이차지원 상한율 적용			
	적용 대상	대출금액	이자지원 상한율	
	이차보전지원 대상 모든 기업	2억원 이하	2.0%	
		10억원 미만	1.5%	
10억원 이상		1.0%		
※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과 우대(추가)지원율이 합산된 합산지원율에 상한율을 적용함				

4) 지원안도 및 내역

구분	지원규모	지원대상	업체당 지원한도	지원내역	대출기간	
합계	7,500억원					
일반지원	4,700억원	일반기업	3억원	이차보전 (기본지원)	23년 ¹⁾	
		우대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FTA 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8대 전략산업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소기업인대상수상기업	1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기업	향토기업	2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5%)
			여성기업	5억원		
		업	장애인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6%)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2천만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부정성지원	산업확충기업	700억원		우리시 전입기업
중견사다리기업	30억원					
강화산업단지 입주기업	5억원					
서운산업단지 입주기업	15억원					
산단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	5억원					
수출기업	500억원		수출계약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2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2%) * 은행 금리우대 별도	6개월, 1년 ³⁾
창업경제혁신기업	500억원	인천창업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3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23년 ¹⁾	
고성장기업I	300억원	3개년도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 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	1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1.0%)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이며 3개년도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 평균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기술창업기업	800억원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을 지원받는 기업	5억원	보증료 지원 (사 0.7%, 보증기관 0.2% 우대)	3년 ⁴⁾	

1) 2,3년 : 2년 만기 일시상환, 6월 거치 5회 균등분할상환
 2) 4년 : 1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 48개월 균등분할상환
 3) 6개월, 1년 : 6개월 만기 일시상환, 1년 만기 일시상환
 4) 3년 : 3년 만기 일시상환

※ 이차보전 지원을 산출절차 및 세부기준

지원율 산출절차	1) 상한율을 적용하기 전의 지원율 산정 기본지원율 + 우대(추가)지원율 = 합산지원율 -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차등지원율)과 우대 및 추가지원율 2) 합산한 지원율의 상한율 체크 - 기업의 합산지원율이 기업의 대출금액에 따른 이차지원 상한율을 초과할 경우, 대출금액에 따른 상한율로 제한 적용
세부 기준	1) 이차지원율은 은행에서 대출취급이 완료된 이후 산정 가능 2) 상한율 체크시 적용되는 대출금액 : 대출 취급시 취급하는 대출금액만 적용

※ 횡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횡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횡수에 대해 심사함
 - 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중소기업인대상, 비전기업, 향토기업, 전략산업영위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은 회차 구분 없이 1회에 한해서 우대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회차 구분 없이 항시 우대
- 재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 조기상환 인정 (금융거래 확인서 제출)
- 지원한도는 총대출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2년	3년	비고
내용	2년 만기 일시상환	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 상환	※ 연장지원 없음

「대출상환방법 예시」



- 대출기간 2년 선택 업체 : 만기 시 원금 100% 상환
- 대출기간 3년 선택 업체 : 대출 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 1/5씩 6개월 단위로 원금 상환총 5회 납입
 ※ 단, 수출자금 대출기간 6개월, 1년은 모두 만기일시 상환
 ※ 단, 기술·창업기업자금 대출기간 3년은 만기일시 상환
 ※ 단,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기업자금 대출기간 4년은 1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 또는 48개월 균등분할 상환
 ※ 단, 인천시는 기업이 선택한 대출기간의 상환스케줄에 의해서만 이차보전을 지원, 원금의 (분할)상환 연체에 따른 발생이자(상환일이 비영업일일 경우 상환연장에 따른 휴일분 이자도 포함)는 기업이 부담함

상환방법

지원제의 대상

- 시 또는 구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단,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사치향락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비전·향토·유망·중소기업인대상 수상 기업 제외)
- 휴·폐업 중인 업체,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인 업체(제조업에 한함)
- 중소기업청 고시(제2011-14호)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 세금 체납중인 기업

4) 구비서류

1 일반기업자금

1 공통 및 업종증빙 서류

제출서류		비고
공통서류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소정양식)	※ 신청서는 별도첨부 없이 온라인에서 작성 ※ 계획서 및 동의서는 접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법인전환 기업은 업력인정을 위해 법인전환서류를 추가로 업로드해야 함 · 개인 - 폐업사실확인원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포괄양수도서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1부 (소정양식)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2부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가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부 ※ 최근 1개월분, 최근결산 2개년도의 12월 신고서 2개월 분	
	사업자등록증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업종별증빙서류

제조업	<택1>	공장등록증명원 1부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업체는 반드시 필요
		건축물관리대장 1부 (용도-공장, 제조업소/소유주 표기)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공장일 경우)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 공장등록증명원이 없는 업체만 해당 ※ 폐쇄부가 아닌 서류로 확인 요망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등록증 1부		
시내버스·택시운송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1부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1부		
측량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1부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1부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1부		
무역업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 각 1부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입주확인서 1부 (정부-인천광역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		
FTA 인증 수출업체	FTA 인증수출자 선정서 1부 (관세청 발급)		
FTA 활용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업체	F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 선정서 1부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업체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서 1부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1부 (업종범위는 【붙임】 참고) ※ 사업자등록증 기재내용은 업종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2 가점사항 추가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8대전락산업 (우대증빙과 중복)	전략산업 확인서 (소정양식), 매출증빙서류 별첨	-
고용우수인증기업 (우대증빙과 중복)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1부 (중앙 및 인천시 선정, 인천지방중기청선정) ※ 인천지방중기청 발급서류는 우대 지원은 안되며 평가에서 가점 처리함	선정문의 ☎ 450-1129
산업단지입주기업	입주계약(확인)서 (산업단지 관리기관)	-
복리후생비 증가율 (공통서류와 중복)	최근 결산 2개년도 재무제표 (복리후생비) 최근 결산 2개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2월 신고서 2개월분(종업원수)	-
가족친화기업 및 출산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 및 출산친화기업 선정서 (정부, 시)	선정문의 ☎ 02-6309-9048
메세나 참여 등 기부기업 (공통서류와 중복)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기부금액)	-

3 우대기업 증빙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고용우수인증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1부 (중앙 및 인천시 선정)	선정문의 ☎ 440-4233
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1부	선정문의 ☎ 440-4278
시지정 우수기업	인천시지정 비전 또는 향토기업 선정서 1부	선정문의 ☎ 440-4252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	인천시지정 중소기업대상 선정서 1부	선정문의 ☎ 440-4255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인천시지정 소상공인경영대상 선정서 1부	선정문의 ☎ 440-4212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1부 (www.smpp.go.kr 발급)	발급문의 ☎1666-9988
여성기업인	여성기업인확인서 1부 (www.smpp.go.kr 발급)	발급문의 ☎ 260-3602
가족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 선정서 (정부, 시)	선정문의 ☎ 02-6309-9048
FTA 인증 수출기업	관세청 인증수출자 선정서 사본 1부	발급문의 ☎ 452-3632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인천시선정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 선정서 사본 1부	-
우리시 8대 전략산업	전략산업 확인서 (소정양식), 매출증빙서류 별첨	※ 확인서는 접수사이트에서 다운로드

4 기타서류

구분	제출서류
창업 1년 이내 또는 결산 미도래 기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과세기간을 연간으로 역산하여 산정), 추정재무제표증명원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
결산재무제표 기간이 1년 이내인 기업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표준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가 확인) 과세기간을 연간으로 역산하여 산정

※ 서류업로드 시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공통서류]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소 정 양 식 (진흥원홈페이지나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계획서는 빈칸 없이 기입하고 은행상담 도장 없을 시 반려될 수 있음 개인 기업은 서명이 가능하나 법인기업은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해야함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소 정 양 식 (진흥원홈페이지나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는 동의에 체크표시, 날짜기입, 서명이나 날인 필요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2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한 서류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필요 재무제표는 각각 표지 포함하여 원본으로 첫 장부터 끝장까지 업로드 ※ 2014, 2015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부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서류나 확인이 안될 경우 전자신고증 추가 ※ 2015년, 2014년, 2013년 12월분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및 기타서류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재지이전하거나 대표자추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최근 서류로 준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은 대표자가 아닌 회사이름으로 발급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업종증빙서류]	
공장등록증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사업등록증과 정보가 동일해야하며 관리공단의 도장 날인이 필요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소재지로 용도 및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제출 *표제부가 아닌 서류등록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하게 500㎡이하고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임대기간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재계약하거나 자동연장문구를 삽입하여 임대인/임차인의 도장 날인 후 업로드 임대인은 건축물대장 소유주와 일치해야 함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인 경우 새로 발급받거나(갱신여부 포함) 주소 명기된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우대증빙서류]	
우대지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시지정 우수기업, 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인대상, 관내이전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FTA 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우리시 8대 전략산업은 해당시 업로드 업체명/사업자번호/대표자명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각 항목이 일치하는지 확인,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기한 내 해당 여부를 확인 요망
[기타서류]	
금융거래서	조기상환한 업체는 해당 지원건의 대출날짜/대출금액/기존만기일/실제상환일이 포함된 금융거래를 추가로 등록 *양식은 은행별로 상이

- ※ 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된 사항은 미신청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고 위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각종서류는 접수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하나 되도록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목적자금

① 공통서류

제 출 서 류	비 고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소정양식)	※ 신청서는 별도 첨부 없이 온라인에서 작성 ※ 계획서 및 동의서는 접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1부 (소정양식)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1부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가능	
업종증빙서류 (일반지원과 동일)	
사업자등록증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② 목적자금 추가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해 확 인 산	우리시전입기업	이전일자 확인서류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 실 증 명)
	중견사다리기업	인천시지정 중견사다리기업 선정서 1부
	신규산업단지 입주기업	입주계약서 (1년 이내 입주확인서 제출) 관리기관 발급 입주확인서 이전일자 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발급 사실증명) ※ 입주 전 / 사유발생 1년 이내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확인서 이전일자 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발급 사실증명) ※ 사유발생 1년 이내
	창조경제혁신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서 1부
수출기업	수출실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수출계약서류(L/C, T/T, 구매확인서, 계약서 등)	
고성장기업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전 2개년도 (2개년도 추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최근 3개년도 마지막 월 신고서 (3개월 분)	
기술창업기업	통 장 사 본 1부 ※ 법인(개인사업자-대표)명의로 통장	

5) 업종범위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범위

산 업 명	표준산업분류번호
도로화물 운송업	493
해상 운송업	501
화물 취급업	5294
창고업	5210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13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1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52992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6939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74212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포함)	(39009)
폐기물 처리업	382
폐수 처리업	3701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범위

산 업 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6312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6399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1
농학 연구개발업	7011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3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9
경제학 연구개발업	70201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9
시장조사업(여론 조사업 제외)	71400
경영컨설팅업	7153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9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제품 디자인업	73202
시각 디자인업	73203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209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1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9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4

지식서비스업 범위

산 업 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콜센터·텔레마케팅업	75991
전시 및 행사대행업	75992
포장 및 충전업	75994

4 구조고도화자금

1) 지원대상

■ 기계구입자금

① 제조업 요건 충족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및 공장등록)

- 최근 결산년도 손익계산서에서 【제품매출】 / 【전체매출】 비율이 30% 이상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공장/제조소 용도)

②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시설 등을 구입

■ 공장확보자금

① 제조업 요건 충족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및 공장등록)

- 최근 결산년도 손익계산서에서 【제품매출】 / 【전체매출】 비율이 30% 이상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공장/제조소 용도)

② 자가공장을 확보하기 위한 공장구입 및 신축, 공장증설을 위한 증축 등

- (신축)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자가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매입)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기존공장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득한 기업
- (증축) 자가공장을 증설하고자 공장증설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임대보증금 지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득한 기업
- (도시개발에 따른 이전대상) 공장이전대상기업이 기존공장(자가)을 폐쇄하고 자가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기업
- (리모델링)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담장, 전시장 등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기업

■ 연구소설치자금

- ① 제조업 요건 충족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및 공장등록)
- 최근 결산년도 손익계산서에서 【제품매출】 / 【전체매출】 비율이 30% 이상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공장/제조소 용도)

- ②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한 건물신축, 건물구입, 건물 증.개축 등
- (신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연구소를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매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구입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 (증.개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증.개축 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벤처창업자금

- ① 창업 7년 이내
 ② 벤처기업(예비벤처 포함)이거나 이노비즈기업,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기업

- ※ 두 가지 요건이 서류상 충족되면 신청가능, 추후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평가 의뢰 후 평가되는 보증금액만큼 벤처창업자금으로 추천함
- ※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등급 B이상인 창업 3년 이내의 기업도 추천가능함

■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2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자

■ 재해자금

- ① 경영안정자금 대상 및 구조고도화 대상 전 업종
 ②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등의 인적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
-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 지원내용

■ 지원한도 및 금리

구분	지 원 사 업	용자 한도	용자 기간	대출 금리		
업종 (270 억원)	구조 고도화 자금	자동화 연계운전자금 (최대2억원)	10억원	8년 (3년까지 5년 분기별 분할상환) 3년 (1년까지 2년 분기별 분할상환)	2.8% (변동)	
		소기업 육성 연계운전자금 (최대1억원)	4억원	8년 (3년까지 5년 분기별 분할상환) 3년 (1년까지 2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업 시설 자금	공장 확보	10억원	8년 (3년까지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업부설연구소설치	10억원	8년 (3년까지 5년 분기별 분할상환)		
	산업 (230 억원)	산 기 조 업 반 성	벤처창업자금 (20억원) 운전자금 (최대3억원)	7억원	8년 (3년까지 5년 분기별 분할상환) 5년 (2년까지 3년 분기별 분할상환)	2.3% (고정)
			지식산업센터건설 (200억원)	200억원	8년 (3년까지 5년 분기별 분할상환)	2.8% (변동)
		재해기업 (30억원)	2억원	5년 (2년까지 3년 분기별 분할상환)	0%	

※ 상기 금리는 변경가능

지원제의
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벤처창업자금 및 산업구조고도화자금 제외)
-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용도:공장, 제조소)일 경우 가능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휴.폐업 중인 기업
- 중고 시설 및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청 고시(제2011-14호)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 시 또는 구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 시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업체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업력 5년 이상 기업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

■ 산정기준

【공 통】

- 신청일 현재 업종구조고도화자금(구,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및 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총액(대출잔액기준)이 지원한도액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은 제외
- 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지원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최저 지원금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함
- 기 지급된 금액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해당금액만큼 감액하여 추천함
- 신청금액이 시설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제외하고 추천함
-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기계구입자금】

- 견적서(계약서)에 표시된 구입가격을 적용함
- 연계운전자금은 시설자금의 50%범위내에서 제조시설면적에 따라 최대2억원(자동화사업) 또는 최대1억원(소기업육성) 범위내에서 지원
- 금형/치공구, 중고기계, 구입완료시설은 지원에서 제외함
- 외산기계는 신청일 현재 고시환율 중 전신환(고객이 살 때)금액으로 계산하여 초과액은 제외하고 추천함
- 외산기계의 구입가격은 CIF(도착항 인도가격)이하를 기준으로 함

【공장확보·연구소설치자금】

-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 공장구입자금은 건물본의 시가표준액 범위내(실거래금액이 작을 경우 실거래가 적용)에서 초과액은 제외하고 추천함
 - ※ 건물분 시가표준액 :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 공시내용 확인
- 공장신축자금은 견적서(계약서)에 표시된 소요금액을 적용함

【벤처창업자금】

- 운전자금만도 3억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평가금액으로 추천금액이 결정됨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 건설자금은 도급계약서에 표시된 소요금액을 적용함

【재해자금】

-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최대 2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횡수제한, 중복지원, 매출액 상관없이 지원
 - ※ 전체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함

3) 구비서류

■ 공통서류

- ① 사업계획서 1부 - 소정양식
- ② 사업자등록증 1부
- ③ 공장등록증 1부 (공장건축면적500㎡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용도·공장,제조소) 및 임대차계약서)
 - ※ 벤처창업자금 및 산업구조고도화자금은 제외
- ④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⑤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 소정양식
-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자금별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자동화 및 소기업육성	① 구입시설견적서(계약서) 및 카달로그 각 1부
자가공장 확보	① 공장설립승인서 1부 (또는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 증설승인 1부) ② 검인매매계약서 1부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건축자금필요시 건축허가서 및 공사계약서(또는 견적서) 각 1부) ③ 임차공장증빙서류 각 1부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법인등기부등본) ④ 도시개발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기업 확인자료 1부 (해당기업만 첨부)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①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 ② 검인매매계약서 1부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건축자금필요시 건축허가서 및 공사계약서(또는 견적서) 각 1부)
벤처창업	① 벤처 및 이노비즈 입증서류 1부 (또는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1부) ② 구입시설 견적서(계약서) 및 카달로그 각 1부 (시설자금의 경우)
지식산업 센터건설	①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서 1부 (또는 입주계약서 1부) ② 건축허가서 1부 ③ 도급계약서 및 설계도면 각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재해기업	① 재해자금 사용계획서 1부 - 소정양식 ② 재해확인서류 1부 ③ 업종증빙서류 1부 (경영안정자금 대상 및 구조고도화 대상 전업종)